

수원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8가단116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화성시

소송대리인 B, C, D

변론 종결 2020. 2. 13.

판결 선고 2020.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20. 3. 12.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70,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父) E이 1988.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이 2017. 5. 7.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동리가 형성되면서부터 1983년 이전부터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안길 도로인 F과 G이 형성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55, 56, 67, 66, 62, 64, 65, 26-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6㎡(이하 '1 도로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④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20, 21, 22,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2㎡(이하 '2 도로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표시 3, 4, 5, 6, 7, 23, 2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4㎡(이하 '3 도로부분'이라 한다)는 F에, 별지 목록 기재 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96, 97, 98,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이하 '4 도로부분'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③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98, 105,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이하 '5 도로부분'이라 하고, 1 내지 ⑤ 도로부분을 함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G에 포함되어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다. 피고 산하 H면은 2013년경 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통해 이 사건 계쟁부분중 1, 3, 4, ⑤ 도로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된 F과 G을 포장하여 이를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2014년과 2016년경에도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또한 피고 산하 맑은물사업소는 2015. 5. 26.부터 2015. 9. 13.까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포함된 G에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도로부분이 포함된 F과 G에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등 참조).

2) 부당이득의 성립과 그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부분이 사실상 마을주민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인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2013년경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포장공사 및 상수도관 배관공사,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한 2013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도로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다만 2013년경에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포장공사가 시행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부분에 관한 포장공사 완료시점이 2013. 4. 30. 이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2013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에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비포장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② 도로부분 32㎡도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피고에 구하나, 피고가 ② 도로부분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사실상지배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대법원 2019. 1.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J 외 1인이 2015. 7.경 분할 전의 화성시 K 전 2,033㎡ 중 14㎡에 관하여 화성시 L로 분할하여 도로를 설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개발행위가 완료된 2016. 7.경 E이 위 L 토지에 관하여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토지이동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 및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 고,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래부터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2014. 1. 1.경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에 관하여는 편입 당시 이용상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할 당시의 현황인 도로를 전제로 토지의 기초가격 및 임료를 평가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2014.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8. 4. 30.까지의 임료 합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6,628,846원이다.

산정기간	① 도로부분	③ 도로부분	④ 도로부분	⑤ 도로부분	합계
2014. 1. 1- 2014. 4. 30.	314,160원	33,546원	69,080원	413,000원	829,786원
2014. 5. 1.- 2016. 4. 30.	973,080원	103,360원	213,840원	127,400원	1,417,680원

2015. 5. 1.- 2016. 4. 30.	991,440원	106,080원	217,800원	130,900원	1,446,220원
2016. 5. 1.- 2017. 4. 30.	1,003,680원	106,760원	220,440원	131,600원	1,462,480원
2017. 5. 1.- 2018. 4. 30.	1,009,800원	108,120원	221,760원	133,000원	1,472,680원
					6,628,846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6,628,8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윤희